

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. 10. 19 선고 2020가단2344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안

담당변호사 곽정훈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호

변 론 종 결 2021. 9. 13.

판 결 선 고 2021. 10. 19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19. 5. 31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C에게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. 5. 31. 접수 제155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의 C에 대한 채권

- 1) C은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주식투자를 한 후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받은 대금 21,685,477원을 원고를 위해 보관하던 중, 2019. 5. 18.경 원고로부터 위 대금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거부하였다.
- 2) C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갚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2018. 5. 10.부터 2019. 5. 3.까지 합계 102,000,000원을 교부받았다.
- 3) C의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2021. 4. 6.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고단477 사건에서 ‘피고인(C)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. 피고인은 배상신청인(원고)에게 123,685,477원을 지급하라’는 판결이 선고되었다.

나. C과 피고의 관계 및 부동산 증여

- 1) C과 피고는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8. 2. 13. 이혼하였는데, 2020. 4. 21. 위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혼이 취소되었다(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19드단10812).
- 2) C은 2019. 5. 31. 자신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고 한다)을 피고에게 증여하고(이하 당시 체결된 증여계약을 ‘이 사건 증여계약’이라고 한다),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. 5. 31. 접수 제15512호로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‘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’라고 한다)를 마쳐주었다.

다. C의 재산 상태

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, 을 제4, 5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

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D조합, E은행, IBK기업은행, F은행, G은행, H은행, I은행, J
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, 변론
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(사해행위 취소)

가. 피보전채권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의 C에 대한 위 123,685,477원의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
체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

1) 앞에서 본 바와 같이 C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, 이는
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.

2) 피고는,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가 매수한 특유재산으로 C에게 명의신탁 한 것일 뿐이고, 피고와
C이 이혼하게 되면서 실제 소유자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일 뿐 실제로 C이 이 사건
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.

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. 6. 16.
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피고가 매수인으로 기재된 사실, 매매대금은 피고의 예금계좌에서
지급되었으며, 그 과정에서 피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(안동시 K아파트 L호)을 매도하고 그 대금이 이
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사실, 2010. 5. 11. C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
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을 채무자로 하여 2건의 근저당권이
설정되었는데(근저당권자 M조합),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이자도 피고의 예금계좌에서
납부되었고, 피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(안동시 N 지상 건물)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이 사건 각
부동산에 설정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그러나 이 사건 각
부동산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까지 C과 피고가 20년 이상 혼인생활을
유지했고,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로도 약 8년간 혼인생활이 유지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,

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수대금이나 대출금채무를 피고가 혼자서 부담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다. 소결론

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

피고는,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과 이혼한 상태였고 위 이혼이 취소되기 전이었으므로 C의 채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,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. 그러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오히려 갑 제8,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(2019. 5. 31.) 전인 2019. 5. 25. 피고에게 ‘원고가 C로부터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으므로 형사고소를 하겠다’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, 2019. 5. 29. C을 형사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.

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.

4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.

판사 이정현

<별지>

부동산의 표시

1. 경상북도 안동시 대 420㎡

2. 위 지상 건물

[도로명주소]

경상북도 안동시

경량철골조 및 벽돌조 제1종

그린생활시설 및 주택

1층 제1종 그린생활시설 및 주택 131.20㎡

2층 제1종 그린생활시설 87.86㎡

- 이 상 -

